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의회의 승인요건으로
-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
-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가능 사항 여부, 지출액 결정 중 불용액 과다여부, 연례적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 등을 착안하여 심의하여야 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예산으로 편성 가능하지도 않는지
- 답 : 긴급하고 예산으로 편성 불가피한 부분만 예비비 지출
- 문 : 이월액 발생사유는
- 답 : 동절기 공사중단 등 연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부분을 불가피하게 이월
- 문 :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는
- 답 : 모든 사업은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나 예비비는 설계없이 조사에 의하여 예측사업비로 책정 집행하므로써 다소 불용액 사례발생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9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